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y 13,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폴란드: 글로벌 최저한세 (BEPS 2.0 Pillar 2) 입법안 발표

유럽연합의 최저한세 지침(Minimum Tax Directive, Council Directive (EU) 2022/2523 of 14 December 202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의 폴란드 도입안이 폴란드 정부 입법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입법안은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 Rule, "UTPR")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질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서면질의 제도(Top-up Tax Opinion)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서면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5,000 폴란드즈워티를 착수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최대 75,000 폴란드즈워티를 최종 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 입법안의 시행일은 2025 년 1 월 1 일이나, 납세자는 2024 년 1 월 1 일 사업연도부터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슬로바키아: 2023 사업연도 이전가격 문서화 지침 발표

슬로바키아 재무부가 2023 년 이전가격 문서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No. MF/020061/2022-724) 해당 지침은 다음 세 가지 문서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체범위(full-scope) 이전가격문서: 특수관계자들을 상세하게 다룬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와 국제거래가 시장환경에 부합하는 이전가격에 근거하였음을 입증하는 국가별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기본(basic) 이전가격문서: 전체범위 이전가격문서보다 단순한 통합기업보고서와 이전가격거래의 시장환경 분석을 포함할 의무가 없는 개별기업보고서
- 간소화(simplified) 이전가격문서: 별첨서식에 따라 간소화된 문서

이전가격문서는 과세당국 요청 시 15 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일(12 월 말 사업연도 종료 시 4 월 1 일) 이후 2 일 뒤(4 월 3 일)부터 이전가격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OECD: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 2024 연차보고서 발표, 국가별보고서와 디지털경제에 초점

OECD 가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이하 “TIWB”) 2024 연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 와 UNDP(유엔개발계획)는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세수를 증가시키고 국내 세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TIWB 프로그램은 국제조사 전문가들을 개발도상국의 세무기관에 파견하여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현장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IWB 는 2015 년 출범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의 국가를 대상으로 71 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약 23 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현재 59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조사업무에 대한 지원에 이어 TIWB 는 탈세행위 수사와 국가간 정보 자동교환까지 지원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세무기관의 디지털화와 국가별보고서(CbCR)의 실용적인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TIWB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의 효율적인 조세법 시행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사업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세무조사를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135 개 이상 회원국이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필라 2)는 국제 세제체계를 크게 개혁하므로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지원요청이 예상됩니다.



최신예규/판례: 감심 2023-722. (2024.01.10)

제목: 청구법인은 베트남에 처분 및 사용권한이 있는 물리적 공간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가공업체와 매출처에 본사 인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LCD용 광학필름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한 롤 형태 광학필름을 베트남 현지 ○○(이하, "임가공업체")에 반출함
- 임가공업체는 청구법인이 대여한 설비로 광학필름을 재단하여 시트 생산한 후 청구법인과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하, "현지 직원")의 검사를 통해 □□(주)의 베트남법인 △△(이하, "매출처")에 납품함(외국인도수출방식)
- 매출처는 현지 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19 및 '21 사업연도 각각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1%인 ○○○원과 ○○○원(이하, "쟁점 외국인계약자세")의 원천세를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총 대금에서 쟁점 외국인계약자세를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함
-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원천징수한 쟁점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환급하고 '20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과 '21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청구 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 2) 쟁점

-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업체가 수행하는 재단 공정은 제품의 규격을 충족시키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단순히 본사 인원이 현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따라 임가공업체가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업체와 매출처는 제조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미하여 광학필름 생산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장소이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li> <li>- 청구법인은 베트남 과세당국에 고정사업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고용한 현지</li> </ul>

- 청구법인이 고용한 현지 직원이 담당하는 고기능 제품인 광학필름에 대한 전수검사는 5%가량의 불량시트를 추출하는 필수적이고 주된 공정으로, 이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베트남 과세당국에 고정사업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국·베트남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에는 고정사업장 설치 신고 전제를 바탕으로 과세요건 발생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베트남은 현지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 일정한 기업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외국인계약자세는 소득에 근거한 세액에 해당함

직원 1명의 고용기간은 경정청구의 과세대상 기간인 '19 ~ '21 사업연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급대가의 1%로 산정된 쟁점 외국인계약자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된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4) 판단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베트남에 처분 및 사용권한이 있는 물리적 공간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임가공업체와 매출처에 본사 인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법인은 광학필름 롤의 재단과 검사 활동이 회피불가능한 필수적인 공정이므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베트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재단과 검사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03 관세

### 수출물품의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 1.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 (1) 개요

지난 4월 26일 관세청은 '23년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이란, 수출 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및 증빙서류의 조사

를 통해 진위 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 (2)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은 수입상대국의 요청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 FTA 외에 관세 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등

## (3) 2023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구분		2021	2022	2023	전년대비
FTA 특혜 등	튀르키예	492	229	198	△13.5
	EU	50	71	68	△4.2
	인도	147	30	18	△40.0
	아세안	14	23	16	△30.4
	중국	7	6	12	100
	기타	4	4	6	50
비특혜		16	6	5	△16.7
합계		730	369	323	△12.5

(단위: 업체 수, %)

FTA 특혜 원산지 검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하였으며, 비특혜 원산지 검증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수출자를 조사하는 직접검증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국 관세당국이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한 간접검증 자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검증 사례

협정 및 국가별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가 상이하며, '23년에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이유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협정 및 국가별 주요 검증 요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튀르키예 FTA]

품목	섬유류(편직물)> 기계류(차량 부분품)> 화학공업제품(석유화학제품 등)
요청 사유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한-EU FTA]

품목	기계류(전기자전거)>화학공업제품(석유화학제품)>전자제품(통신장비 부품)
요청 사유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한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한-인도 CEPA]

품목	철강금속제품(납제품 등)>화학공업제품(제지원료 등)>전자제품(부분품 등)
요청 사유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한-중국 FTA]

품목	광산물(석유조제품)>플라스틱제품(접착성 필름)>화학공업제품(석유화학제품 등)
요청 사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수입국과 수출국 간 품목분류 상이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됨

### [KPMG 의견]

FTA 특혜 원산지 검증은 한-튀르키예, 한-EU, 한-중국 FTA 등과 관련하여 검증 요청이 집중되고 있으며,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중국산 제품의 한국 우회수출 의심 품목에 대한 EU의 검증 요청이 대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강화로 우회 수출 관련한 원산지 검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특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검증 및 증빙 확보가 사전에 필요할 것입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안내

### 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 (1) 배경

최근 관세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 특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 (2) 제도 개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 (3) 신청 대상

원산지 사전심사는 아래 대상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②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③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④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 ⑤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⑥ 수량 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 2. 활용 사례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안정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관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사례 1: 다국적 식료품 유통기업 A 社]

- 한-미 FTA 중 제20류 식료품은 타 협정과 달리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 엄격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FTA 특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물품의 제조공정이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공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수입물품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받아 협정 관세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 [사례 2: 국내 석유화학회사 B 社]

- 아세안 현지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촉매를 백금 등의 원재료 회수용으로 국내로 수입 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
  - 수입하기 전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여 원가 절감 및 자원재활용 효과 창출

### [사례 3: 국내 금속가공회사 C 社]

- 한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미국에서 추가 가공하여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한-미 FTA에 따른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
  - (\*누적기준: 상대국의 원재료를 이용해 물품을 제조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 수입하기 전에 한-미 FTA 누적기준 및 협정상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정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효과를 누림

### [KPMG 의견]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통해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 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며, 통관 이후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련 사후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자에게 협정관세의 안정적 적용이라는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도, 활용이 미비하여 최근 관세청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FTA 체제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